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……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43
----------	-----

2016.3.15.(화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3일

(제34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원장 차선세)

가. 제안이유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의 개정에 따라 기존 [별지서식]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[별지 제1호서식], [별지 제2호서식], [별지 제4호서식] 작성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정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- ‘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‘개인정보 보호법’에 따라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에서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, [별지 제2호서식]과 [별지 제4호서식]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직 무 육 성 품 종 신 고 서							
신 청 인 (직무육성자)	①성 명			②생년월일			
	③주 소			④전화번호			
	소 속	⑤현 재		직 급	⑥현 재		
	⑦육성당시		⑧육성당시				
⑨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							
⑩ 품 종 의 명 칭							
⑪ 공동육성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 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		⑫지 분				
공동육성자	⑬성 명			⑭생년월일 (외국인은 국적)			
	⑮주 소			⑯전 화 번 호			
<p>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고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충청북도지사 귀하</b></p>							
첨부서류 : 직무육성품종설명서 1부							



[별지 제4호서식]

접수인란			
<b>견 적 서</b>			
제출인	①성 명		②생년월일 (외국인은 국적)
	③주 소		④전화번호
도유품종 보호권의 표시	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		
	⑥품종의 명칭		
⑦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			
⑧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서	별 첨		
<p>「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</p> <p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>신청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 )</p> <p><b>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귀하</b></p>			



## 관련법령 발취

□ 개인정보 보호법(법률 제13423호, 2015.7.24., 일부개정)

### 제3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
-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

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## 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

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8.6.>
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8.6.>